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52 호

2005년 9월 16일 금요일

차 례

훈 령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218호(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서비스현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 3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12호(개별공시지가열람및의견제출요령공고) 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13호(인천광역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공람공고) 1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19호(도로명공고) 1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20호((긴급)공사입찰공고(벌터고개공원조성공사)) 1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21호((긴급)공사입찰공고(남동정수장주변건고싶은거리 조성공사)) 1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22호(보상계획열람공고(간석동소3-1호선도로개설공사)) 1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23호(부루세라병양성우발생에따른이동제한공고) 2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24호(공시송달(식품위생법위반에따른청문 실시)) 2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26호(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비부운영규칙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2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27호(인천광역시남동구청유소년축구단운영지침(안)행정 예고) 4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28호((긴급)공사(소액수의)전자입찰공고(논현동66-5번지 부근(임시)공영주차장설치공사)) 5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29호(공유재산매각입찰공고(구만수3동청사)) 5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34호(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안)입법예고) 57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훈 령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9 월 16일

인천광역시남동구 훈령 제 218 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고객”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개인·기업체·단체 등을 말한다.

③ “행정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관련 고객의 생업 또는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관업무 분야별로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④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태도,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행정기관 이행정도 및 민원인 편의 시설 등 고객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4조(현장의 제정)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은 삭제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본청의 업무 성격과 고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현장은 전문으로 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하고, 세부 이행사항은 공통이행기준과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으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의 개선)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현장의 개선)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개선하여야 한다.

1. 현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현장의 내용이 실천하기에 비능률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3. 고객으로부터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4.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5.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이외에도 고객의 요구사항 및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정기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의 제·개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제9조 내지 제20조로 한다.

- ① 현장 제·개정시 작성단계에서 제6조 제7호에 의한 고객 및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은 제16조에 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현장의 이행)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현장의 이행) ① 현장제정 기관의 장은 제정 및 개선계획 수립에 따라 현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남동구의 모든 공무원은 행정서비스현장 전문과 공통 이행기준을 준수하고,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은 이를 제정한 부서의 소속공무원 모두가 준수하여야 하며,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및 창의적인 업무 개선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1항의 “제15조의”를 “제16조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부서별로 제정·운영되던 행정서비스 현장을 통합하고 공통 이행기준 및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현장 운영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객만족도 등의 용어 정의(안 제2조)
- 현장 제정 및 공통이행기준,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 마련(안 제4조)
- 현장의 개선 사유 구체화(안 제5조)
- 현장 제·개정시 고객의 의견과 소속 공무원의 의견 반영(안 제8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612 호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9. 12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05.1.1~6.30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5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05년 9월 12일 ~ 10월 4일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민원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5년 9월 12일 ~ 10월 4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 제출방법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032)453-2343,2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종합토지세 · 취득세 ·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 · 공유재산의 대부료 ·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613 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9. 1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1. 관리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 계획의 범위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27.96km²
- 계 획 기 간 : 2001 ~ 2006(5개년)
- 2004년 관리계획변경(안) 대상사업

연번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1	인천시립자연 생태박물관	남동구 장수동 623번지 일원	10,000	10,082.33	신규
2	선학 근린공원	연수구 선학동 38번지 일원 (남동구 구월동 837번지 일원 포함)	828,000	4,000	신규

2.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 및 의견수렴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610)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619 호

도로명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 아래 지역에 대한 도로명을 심의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5. 9. 12 ~ 9. 20

2. 공고내용

- 서창동(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일련 번호	도로 위계	도로명	부 여 사 유	기·종점		비고
				기점	종점	
1	소로	장아산길	옛날에 장군이 숨어 있었다는 산	장수동 620-6	43BL -8LT	
2	"	곡촌1길	골짜기 마을	1BL -1LT	1BL -3LT	
3	"	곡촌2길	서수부여	3BL -14LT	2BL -2LT	
4	"	구룡1길	용이 아홉 마리 있었다는 곳	5BL -1LT	12BL -7LT	
5	"	구룡2길	서수부여	9BL -1LT	10BL -8LT	
6	"	구룡3길	"	9BL -7LT	5BL -13LT	
7	"	독곡길	독을 굶던 골짜기 마을	9BL -6LT	45BL -7LT	
8	"	독곡안길	독곡길의 안쪽길	26BL -1LT	195-3	
9	"	설래1길	포구에 서창이란 창고를 짓고 배가 들어왔다는 곳	41BL -2LT	39BL -1LT	
10	"	설래2길	서수부여	43BL -6LT	42BL -1LT	
11	"	설래3길	서수부여	48BL -1LT	52BL -7LT	
12	"	장골길	옛날 명인이 숨어 있었다는 곳	54BL -1LT	59BL -1LT	
13	"	걸재천길	걸재천 반영	4BL -1LT	50BL -7LT	

-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 고잔동 일원

일련 번호	도로 위계	도로명	부 여 사 유	기 · 종점		비고
				기점	종점	
1	소로	로데오거리	로데오축제가 열리는 광장 반영	1409 -34	1457 -1	제정
2	"	풀무길	간석3동사무소 일대로 옛날 대장간이 있었다는 마을유래 반영	67-2	114-6	변경 (길대학길)
3	"	만경길	논이 있었다는 들녘	889-13	897-11	변경 (자치길)
4	"	공단공원길	공공시설명 반영	470	470-2	변경 (복지길)

- 도로명 폐지

1. 구월동 : 기러기길, 제비길
2. 만수동 : 산호6 ~ 10길

2005. 9.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620 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별터고개공원 조성공사

나. 공사위치 : 남동구 간석동 606-23번지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라. 공사개요

- 식 재 공 ----- 교목16주, 관목 627주
- 시설물공 ----- 조합놀이대외 18종
- 포 장 공 ----- 점토벽돌포장외 5종
- 우 수 공 ----- 집수정외 1종

마. 설계금액 : ₩311,811,850원(추정가격 283,465,320원, 부가세 28,346,530원)

바.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있는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조경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05. 09. 13(화) 09:00~2005. 09. 21(수) 15:00

나. 설계도서 열람일시및장소 : 2005. 09. 13(화)~2005. 09. 21(수) [도시정비과]

다. 입찰서는 반드시 정부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 은 정부전자조달(G2B)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5. 09. 21(수) 16:00

나.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금액(311,811,85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160호)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032-453-2210)또는 도시정비과(032-453-270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홈페이지(<http://namdong.go.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 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09월 12일

인천광역시남동구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621 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동정수장주변 견고싶은거리 조성공사

나. 공사위치 : 남동구 장수동 762-2번지 남동정수장 동측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개요

- 포장공사 ----- 보조기층 42a, 투수콘크리트 5a
- 토 공 ----- 절 · 성토 318a
- 배수공 ----- 153m
- 부대공 ----- 1식

마. 설계금액 : ₩90,541,000원 (추정가격82,310,000원, 부가세8,231,000원)

바.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두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05. 09. 13(화) 09:00~2005. 09. 21(수) 13:00

나.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5. 09. 13(목) ~2005. 09.21(수) [건설과]

다. 입찰서는 반드시 정부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정부전자조달(G2B)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5. 09. 21(수) 14:00

나.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금액(90,541,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032-453-221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09월 1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622 호

보 상 계 획 열 램 공 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간석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5. 9.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명칭 : 시립도서관 이전신축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규모 : L=128M, B=5M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7-25번지 부근
5. 보상시기 : 2005. 9월
6.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건설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 간석동 617-25외 1필지
 - 지 장 물 : 도로개설 구간에 저축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후 현금보상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05. 9. 12 - 2005. 9. 25(14일간)
11. 열람장소 : 남동구청 건설과
12. 기타사항
 - ① 토지조서등은 남동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토 지 조 서

【간석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토 지 소 제 지		지목	지적 (㎡)	면적 (㎡)	성 명	소 유 자		성 명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간석동	617-25	장	585	585	윤준호	윤준호	동구 송림동 83				4.3/585
						이경원	이경원	서울 강남구 반포동 1257 반포아파트 17동 404호				64.465/585
						이경철	이경철	남구 주안동 417-9				231.05/1170
						이혜자	이혜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0 진보아파트 1106호				64.465/2925
						윤태식	윤태식	서울 서초구 잠원동 52-1 신반포24아파트343동602호				64.465/2925
						윤명식	윤명식	서울 성북구 성북동 168-25 진주빌라 비동101호				64.465/2925
						윤두식	윤두식	서울 서초구 잠원동 65-32 신반포7차아파트301동205호				64.465/2925
						윤혜숙	윤혜숙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0 진보아파트 1106호				64.465/2925
						박상덕	박상덕	서구 가좌동 81-59 범양아파 트 105동 1502호				199.1/585
						진삼종	진삼종	남동구 간석동 617-6				21.62/585
						대한토지신 택주식회사	대한토지신 택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115.525/585
2	간석동	617-108	장	30.7	30.7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623 호

부루세라병 양성우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루세라병 양성우 살처분 및 동거가축 전두수에 대하여 재검 후 음성판정시까지 이동제한을 공고합니다.

2005. 9. 1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치목적 : 부루세라병 발생에 따른 전염병 확산 방지
2. 이동제한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284번지 수산목장
3. 대상가축 : 부루세라 양성우 및 동거가축 전두수(55두)
4. 부루세라병판정 양성우 현황

발생지		고유번호	축종	성별	연령	특징 (색상/뿔/가마)	판정일자	판정 결과	동거 가축수
주소	축주								
남동구 수산동 284	김성수	145383402	육우	우	24개월	백흑,전향각, 면하우,미결	2005.9.9	양성	53두
		84	육우	우	24개월	흑백,제각, 면상좌,양미	2005.9.12	"	

5. 사육두수 : 육우 55두
6. 이동제한 기간 : 양성우 살처분 및 동거우 재검 후 음성판정시까지
7. 기타
 - 양성우는 음성우와 격리사육하고 생산물 이용금지
 - 본 이동제한 명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규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624 호

공 시 송 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귀하에게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 반송등 송달이 불가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못하였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2.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 번호	소재지	주 소
일반음식점	구월4-66	민속주점거기	이선자	500822- 2347812	구월4동 1265-1 2층일부	불명

3.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4. 청문사유 : 시설물 멸실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제58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6.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453)
 - 청문일시 : 2004. 9. 29(목) 10:00
 - 청문장소 : 남동구청 환경위생과(6층) 사무실
 - 청문주재자 :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7. 기 타 : 청문 불참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종결

2005. 9. 1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626 호**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9. 1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직장경기부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취지 : 2005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을 현실에 맞게 운동경기부에 반영하고, 개인기량과 팀전력 향상을 위해 코치를 두어 체계적인 훈련을 도모하며, 효율적인 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본문”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문화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032-453-211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05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2005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을 현실에 맞게 운동경기부에 반영함으로써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기량과 팀전력 향상을 위해 코치를 두어 체계적인 훈련을 도모하며, 효율적인 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운동경기부의 구성 중 '트레이너겸 선수'를 '코치'로 변경(안 제2조)
- 운동경기부심의위원회 신설(안 제3조의3)
- 감독·코치 및 선수의 공가 및 경조사 적용기준 보완(안 제5조제3항)
- 감독·코치 및 선수의 근무상황부 작성 조항 신설(안 제5조제6항)
- 감독의 선수훈련상황 관리 조항 신설(안 제5조의2제4항)
- 운동경기부 봉급지급표 조정(안 제8조제1항 별표1)
- 운동경기부 운동수당 지급기준 조정(안 제11조제2항 별표4)

☐ 본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
-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 경기부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2조(설치및구성) 중 “트레이너겸 선수 1명”을 “코치 1명”으로 한다.

제3조(임용)제1항 중 “자격을 갖춘 감독을 구청장이”를 “자격을 갖춘 감독 및 코치(이하 ‘감독·코치’라 한다.)를 구청장이”로 한다.

동조 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9항을 제2항 내지 제8항으로 한다.

동조 제3항 중 “감독, 트레이너겸 선수 및 선수(이하 ‘감독 및 선수’라 한다. 이하 같다.)”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한다.

동조 제5항 중 “임용된 감독 및 선수에게”를 “임용된 감독·코치 및 선수에게”로 한다.

동조 제6항 내지 제7항의 “감독”을 “감독·코치”로 한다.

제3조의2(정년)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하고, 제1호 중 “감독”을 “감독 및 코치”로 하고, 제3호중 “트레이너겸 선수, 선수”를 “선수”로 한다.

제3조의3(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동구청운동경기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및 문화홍보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체육관련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 활동기간은 당

해 심의사항 종료시까지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실무자가 된다.
5.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감독·코치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 신규임용, 재임용,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코치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 면직에 관한 사항중 제1호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되어 직권면직하는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휘·감독)제1항 중 “소속하에 두고 감독 및 선수는”을 “소속하에 두고 감독·코치 및 선수는”으로 한다.

동조 제3항 중 “운동경기부에 주장을 두되 주장은 감독이 임명하고”를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로 한다.

제5조(복무) 제1항, 제4항 내지 제5항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감독·코치 및 선수는 연간 20일 내에서 연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공가 및 경조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5조(복무)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감독·코치 및 선수는 휴가 등을 실시하기 전에 별지8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 기재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5조의2(훈련)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독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선수 훈련 상황을 기록·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면직) 제1항, 제1항제2호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

수”로 한다.

동조 동항 제8호 중 “감독은 선수가 전국체육대회에서”를 “감독 및 코치는 선수가 전국체육대회에서”로 한다.

제8조(보수 등) 제1항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한다.

동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동조 제1항 제2호 중 “트레이너겸 선수에게는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정근수당 및 트레이너수당 지급구분은 ‘별표2’와 같다”를 “정근수당 지급구분은 ‘별표2’와 같다”로 한다.

제9조(실비보상등)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한다.

제10조(호봉획정) 제1항, 제4항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하고,

제2항 중 “감독 및 선수의 호봉간”을 “감독·코치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 호봉간”으로 한다.

제3항 중 “감독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한다.

제11조(급식비 및 운동수당)제1항 내지 제2항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한다.

동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급 : 전년도 국가대표 선수이거나,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의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2. 1급 : 전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거나, 전국규모대회에서 3회 이상을 1위에 입상한 자”

제12조(실비보상)제1항, 제3항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한다.

제13조(보상금)제1항 내지 제3항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하고, 제2항 중 “다만, 감독의 각종대회”를 “다만, 감독·코치의 각종대회”로 하고, 제4항 중 “다만, 감독의 성과금”은 “다만, 감독·코치의 성과금”으로 한다.

제15조(의료보상) 제1항 내지 제2항, 제16조(피복 및 장비지급 등)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한다.

제8조, 제10조 내지 제13조 관련 【별표1】 내지 【별표5】, 【별표7】 및 제3조, 제5조, 제5조의2 관련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8호서식】, 【별지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 및 【별표4】는 2005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코치는 제외한다.

[별표1]

감독·코치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 봉급지급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호봉	감 독	선 수	합숙소 근무자 (조리사)	호봉	감 독	코 치	선 수	합숙소 근무자 (조리사)	공 무 원 의 보수인상에 따른 운동경기부 보수인상 (2.4%) 시 육상부 동일기준
1	1,201,320	854,550	467,990	1	<u>1,230,150</u>	<u>1,052,660</u>	<u>875,050</u>	<u>479,220</u>	
2	1,222,950	874,590	488,040	2	<u>1,252,300</u>	<u>1,073,940</u>	<u>895,580</u>	<u>499,750</u>	
3	1,244,680	894,640	508,080	3	<u>1,274,550</u>	<u>1,064,610</u>	<u>916,110</u>	<u>520,270</u>	
4	1,266,420	914,570	527,920	4	<u>1,296,810</u>	<u>1,116,730</u>	<u>936,510</u>	<u>540,590</u>	
5	1,287,940	934,620	547,960	5	<u>1,318,850</u>	<u>1,138,000</u>	<u>957,050</u>	<u>561,110</u>	
6	1,311,150	956,460	569,800	6	<u>1,342,610</u>	<u>1,161,010</u>	<u>979,410</u>	<u>583,470</u>	
7	1,334,680	977,870	591,320	7	<u>1,366,710</u>	<u>1,183,910</u>	<u>1,001,330</u>	<u>605,510</u>	
8	1,357,890	999,710	613,060	8	<u>1,390,470</u>	<u>1,207,140</u>	<u>1,023,700</u>	<u>627,770</u>	
9	1,381,410	1,021,240	634,790	9	<u>1,414,560</u>	<u>1,230,260</u>	<u>1,045,740</u>	<u>650,020</u>	
10	1,404,620	1,043,070	656,520	10	<u>1,438,330</u>	<u>1,253,170</u>	<u>1,068,100</u>	<u>672,270</u>	
11	1,429,840	1,066,390	679,730	11	<u>1,464,150</u>	<u>1,278,120</u>	<u>1,091,980</u>	<u>696,040</u>	
12	1,454,520	1,089,810	702,940	12	<u>1,489,420</u>	<u>1,302,750</u>	<u>1,115,960</u>	<u>719,810</u>	
13	1,479,630	1,113,020	726,470	13	<u>1,515,140</u>	<u>1,327,490</u>	<u>1,039,730</u>	<u>743,900</u>	
14	1,504,740	1,136,230	749,680	14	<u>1,540,850</u>	<u>1,352,230</u>	<u>1,163,490</u>	<u>767,670</u>	
15	1,529,750	1,159,760	773,100	15	<u>1,566,460</u>	<u>1,377,070</u>	<u>1,187,590</u>	<u>791,650</u>	
16	1,552,960	1,181,380		16	<u>1,590,230</u>	<u>1,399,980</u>	<u>1,209,730</u>		
17	1,576,270	1,203,120		17	<u>1,614,100</u>	<u>1,423,100</u>	<u>1,231,990</u>		
18	1,599,800	1,224,530		18	<u>1,638,190</u>	<u>1,446,000</u>	<u>1,253,910</u>		
19	1,623,010	1,246,370		19	<u>1,661,960</u>	<u>1,469,120</u>	<u>1,276,280</u>		
20	1,646,430	1,268,000		20	<u>1,685,940</u>	<u>1,492,130</u>	<u>1,298,430</u>		
21	1,667,950			21	<u>1,707,980</u>	<u>1,514,160</u>			
22	1,689,680			22	<u>1,730,230</u>	<u>1,536,430</u>			
23	1,711,310			23	<u>1,752,380</u>	<u>1,558,560</u>			
24	1,732,940			24	<u>1,777,530</u>	<u>1,580,830</u>			
25	1,754,460			25	<u>1,796,560</u>	<u>1,602,750</u>			
26	1,774,610			26	<u>1,817,200</u>	<u>1,623,280</u>			
27	1,794,550			27	<u>1,837,610</u>	<u>1,643,800</u>			
28	1,814,700			28	<u>1,858,250</u>	<u>1,664,440</u>			
29	1,834,640			29	<u>1,878,670</u>	<u>1,684,850</u>			

[별표 2]

정근수당 지급구분

구 분	호 봉	지 급 액	비 고
<u>감독 및 코치</u>	1호봉이상	월봉급액의 100% 해당금액	
선수 및 조리사	1 호 봉	월봉급액의 60% 해당금액	
	2 호 봉	월봉급액의 70% 해당금액	
	3 호 봉	월봉급액의 80% 해당금액	
	4 호 봉	월봉급액의 90% 해당금액	
	5호봉이상	월봉급액의 100% 해당금액	

※개정안 : “구분” 중 코치 추가

[별표3]

특별승급 기준

구 분	해 당 성 적	승급호봉	비고
감독 및 코치	· 소속 선수의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	3호봉	아래 참조
	· 전국체육대회 1위에 2회 이상 입상 또는 단체전 3위 이내 입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	1호봉	
선 수	·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	5호봉	
	· 전국체육대회 2관왕 이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1위 입상	3호봉	
	·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 또는 단체전 3위 이내 입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 국제대회에 3위 이내 입상 · 임용후 국가대표 선발	1호봉	

※개정안 : “구분” 중 코치 추가

[별표4]

운동수당 지급구분

구 분		운 동 수 당
감 독		매 월 250,000원
<u>코 치</u>		매 월 220,000원
선수	특급	<u>매 월 800,000원</u>
	1급	<u>매 월 500,000원</u>
	2급	<u>매 월 300,000원</u>
	3급	<u>매 월 80,000원</u>

※개정안 : “구분” 중 코치 추가, “운동수당” 중 지급액 증감 조정

[별표5]

목욕비, 간식비, 업무추진교통비 지급기준

구 분	목욕비	간식비	교통비
<u>감독 및 코치</u>	50,000원	50,000원	100,000원
선 수	50,000원	50,000원	50,000원

※개정안 : “구분” 중 코치 추가

[별표7]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입 상		종 목 별		지 급 액			아래 참조
				1위	2위	3위	
		감 독		250,000	150,000	100,000	
		코 치		<u>200,000</u>	<u>100,000</u>	<u>70,000</u>	
		선 수	단체종합	500,000	350,000	250,000	
			단체종목	350,000	250,000	150,000	
			개인종합	250,000	150,000	100,000	
			개인종목	150,000	100,000	70,000	
기 록 갱 신 (선수)		기 록 구 분		지 급 액			
		대회신기록 (타이기록)		전국체육대회	500,000		
				전국규모대회	300,000		
		한국신기록(타이기록)		800,000			
		세계신기록(타이기록)		1,500,000			

※ 비고

- 1) 입상부분 보상금 지급은 동일인이 단체분야와 개인분야에서 각각 2개이상 입상한 경우 각 분야별 최고 입상성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 2) 선수의 경우 전국체육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 입상 횟수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며, 전국체육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100%, 국제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200%를 추가 지급한다.
- 3) 입상부분과 기록갱신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안 : 입상의 “지급기준” 중 코치 및 코치 입상보상금 추가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상기자는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3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도력이 탁월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육상부 감독·코치로 추천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체육회장 (인)

인천광역시 ○○경기단체장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소속: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 직 : 성명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용 또는 용무	연락처	결 재		
	부터	까지	일수 시간			수명자	체육지원팀장	문화홍보실장

※ 선수의 경우에는 감독의 확인을 받을 것

[별지 제9호서식]

남동구청운동경기부 훈련일지

담당자	체육지원팀장	문화홍보실장	결 재

년 월 일

작성자 : 감독 (인)

참석 현황	참석대상	참석인원	불참인원	불참내역				
				계	선수준입소	연가	병가	기타
훈련 현황	훈련 시간		훈련 내용		훈련 장소			
특이 사항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및구성) 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은 육상부로 하고 단장은 구청장이 되며, 총원은 9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육상부의 구성은 감독 1명, 트레이너겸 선수 1명, 선수 6명, 합숙소 근무자(조리사) 1명으로 한다. 제3조(임용) 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감독을 구청장이 추천한 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한다. ② 선수들의 사기진작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단 기여도를 감안하여 구청소속 선수 중 우수선수를 트레이너겸 선수로 둘 수 있다. ③ (생략) ④ 감독 및 트레이너겸 선수, 선수(이하 “감독 및 선수”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6. (생략) ⑤ (생략) ⑥ 임용된 감독 및 선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용장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을 발급하고 ⑦ 감독의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 ⑧ 감독의 재임용은 임용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⑨ (생략)	제5조(설치및구성) ----- ----- ----- ----- ----- 코치 1명, ----- -----. 제3조(임용) ① ----- ----- ----- 자격을 갖춘 감독 및 코치(이하 ‘감독·코치’라 한다.)를 구청장이“----- -----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감독·코치 및 선수----- ----- ----- -----. 1.~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임용된 감독·코치 및 선수에게-- ----- ----- -----. ⑥ 감독·코치의----- -----. ⑦ 감독·코치의----- -----. ⑧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조의2(정년)감독 및 선수, 합숙소 근무자(조리사)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감독 : 57세 2. 합숙소근무자(조리사) : 57세 3. 트레이너겸 선수, 선수 : 35세(다만 선수의 기량이 우수할 경우 구청장이 연장할 수 있다) (신설)	<u>제3조의2(정년)감독 · 코치 및 선수,</u> ----- -----. 1. 감독 및 코치 : 57세 2. (현행과 같음) 3. 선수 : (현행과 같음) <u>제3조의3(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u> ①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동구운동경기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성 · 운영 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및 문화홍보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체육관련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 활동기간은 당해 심의사항 종료시까지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5.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조(지휘 · 감독)①운동경기부는 문화홍보실 소속하에 두고 감독 및 선수는 문화홍보실장의 -----</u> -----. ② (생략) ③ <u>운동경기부에 주장을 두되, 주장은 감독이 임명하고 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제5조(복무) ①감독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u> ② (생략) ③ <u>감독 및 선수는 연간 20일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u> ④ <u>감독 및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u> ⑤ <u>감독 및 선수가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u> (신설)	1. 감독 · 코치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 신규임용, 재임용, 등급조정 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 코치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 면직에 관한 사항중 제1호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되어 직권면직 하는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휘 · 감독)①----- -----감독 · 코치 및 선수는----- -----. ② (현행과 같음) ③ <u>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u> -----. <u>제5조(복무) ①감독 · 코치 및 선수의 -----.</u> ② (현행과 같음) ③ <u>감독 · 코치 및 선수는 연간 20일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가 및 경조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u> ④ <u>감독 · 코치 및 선수가-----</u> -----. ⑤ <u>감독 · 코치 및 선수가-----</u> -----. ⑥ <u>감독 · 코치 및 선수는 휴가 등을 실시하기 전에 별지8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기재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u>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훈련) ① ~ ③ (생략) (신설)	제5조의2(훈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독은 별지제9호서식에 의한 선수 훈련상황을 기록,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면직) ①구청장은 감독 및 선수가 다음 각호의----- ----- 1.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감독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3. ~ 7. (생략) 8. 감독은 선수가 전국체육대회에서 ----- 9. ~10. (생략)	제6조(면직) ①구청장은 감독·코치 및 선수가 다음 각호의----- ----- 1.(현행과 같음) 2. 감독·코치 및 선수로서의----- ----- 3. ~ 7. (현행과 같음) 8. 감독 및 코치는 ----- ----- 9. ~ 10. (현행과 같음)
제8조(보수등) ①감독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 1.(생략) 2. -----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하며 트레이너겸 선수에게는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정근수당 및 트레이너수당 지급구분은 “별표2”와 같다.	제8조(보수등)①감독·코치 및 선수, ----- ----- 1. (현행과 같음) 2. ----- -----정근수당 지급구분은 ‘별표2’와 같다.----- -----
제9조(실비보상등)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감독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	제9조(실비보상등)----- ----- 감독·코치 및 선수 -----
제10조(호봉획정)① 감독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를 신규 임용하는----- ② 감독 및 선수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	제10조(호봉획정)①감독·코치 및 선수, ----- ----- ② 감독·코치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 호봉간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 감독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 ④ 감독 및 선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 제11조(급식비 및 운동수당) ①감독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에게----- -----. ②감독 및 선수에게 기량향상을 위하여 운동수당을----- -----. ③운동수당 지급을 위한 선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특급: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자 2.1급: 국가대표선수이거나, 전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거나,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의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또는 전국규모대회에서 3회 이상을 1위에 입상한 자 3. (생략) ④ (생략) 제12조(실비보상) ①감독 및 선수가 훈련, 출전 및 우수선수 ----- -----. ②(생략) ③감독 및 선수에게 목욕비, 간식비 ----- -----. 제13조(보상금) ①감독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	③ 감독·코치 및 선수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④ 감독·코치 및 선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 제11조(급식비 및 운동수당)①감독·코치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에게----- -----. ②감독·코치 및 선수에게 기량향상을 위하여 운동수당을 ----- -----. ③ (현행과 같음) 1.특급: 전년도 국가대표선수이거나,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의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2.1급: 전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거나 전국규모대회에서 3회 이상을 1위에 입상한 자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2조(실비보상) ①감독·코치 및 선수가 훈련, 출전 및 우수선수 ---- -----. ②(현행과 같음) ③감독·코치 및 선수에게 목욕비, 간식비 ----- -----. 제13조(보상금) ①감독·코치 및 선수가-----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u>감독</u>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 다만, <u>감독</u>의 각종대회 입상보상금은 선수의----- -----. ③<u>감독</u>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에 출전한 -----. ④----- 다만, <u>감독</u>의 성과금 지급점수는 해당부 선수의 ----- -----. 제15조(의료보상)①<u>감독</u>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 ②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u>감독</u> 및 선수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피복 및 장비지급등) <u>감독</u> 및 선수에게 각종대회 출전 및 훈련에 -----.	②<u>감독·코치</u>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 다만, <u>감독·코치</u>의 각종대회 입상보상금은 선수의 ----- -----. ③<u>감독·코치</u>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에 출전한-----. ④----- 다만, <u>감독·코치</u>의 성과금 지급점수는 해당부 선수의----- -----. 제15조(의료보상)①<u>감독·코치</u>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 ②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u>감독·코치</u> 및 선수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피복 및 장비지급등) <u>감독·코치</u> 및 선수에게 각종대회 출전 및 훈련에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62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침(안)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내지 제47조(준용)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9. 1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침(안)
2. 제정취지 : 2004년 5월 남동구청 유소년축구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각종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에 본 지침을 제정하여 향후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지원으로 우수한 선수로 육성하고 축구발전에 기여하고자 동 지침을 제정
3. 주요제정내용 : “본문”참조
4. 의견제출

이 지침(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문화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032-453-211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침(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5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최근 축구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크게 대두되어 어릴적부터 체계적인 연습과 기량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04. 5월 남동구청 유소년축구단을 창단하였고, 이후 각종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에 본 지침을 제정하여 향후 안정적인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선수들의 자긍심 고취 및 경기력을 향상시켜 남동구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고 나아가 우수한 선수로 육성하여 축구발전에 기여코자함.

☐ 주요내용

- 축구단 구성(안 제2조)
- 감독·코치의 위촉·복무·해임(안 제3조 내지 제5조)
- 선수의 모집·선발·탈퇴(안 제6조, 제7조)
- 선수훈련 및 대회참가(안 제8조)
- 보험가입 및 실비보상(안 제9조, 제10조)
- 학부모회 운영(안 제11조)

☐ 본 문 : "별첨"

☐ 참고사항

- 부평구어린이축구단 운영지침
- 동구청어린이축구단 운영지침

인천광역시남동구 예규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동구청유소년축구단(이하 ‘축구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축구단의 단장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으로 하며 감독, 코치 각 1인과 35명 이내의 선수로 구성한다.

제3조(감독·코치의 위촉) ① 감독 및 코치는 25세 이상 55세 이하로 1년 이상의 축구지도자 경력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② 감독 및 코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감독 및 코치의 수당은 1일 4만원으로 정한다.

④ 위촉시 구비서류는 감독·코치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와 이력서에 의한다.

제4조(감독·코치의 복무) 축구단의 감독 및 코치의 복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코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선수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지도자로서의 품행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2. 감독은 선수발굴, 선발 및 지도, 경기운영 등의 책임을 진다.
3. 코치는 감독을 보조하고, 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독은 선수출석상황, 훈련내용, 특이사항 등을 운영일지(별지 제 4호 서식)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코치의 해임) ① 본인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로 주의 촉구하고, 반복될 경우 강제로 해촉 할 수 있다.

1. 지도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축구단 운영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 지도·감독할 수 없는 경우
5. 민·형사상 책임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선수의 모집·선발) ①모집 대상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재학생으로 한다.

②축구단에 입단을 희망하는 어린이는 학교장의 추천(별지 제2호서식)을 받아 가입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축구단의 정기모집은 매년 3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결원 발생시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④선수는 체력, 개인기, 슛팅 등 소정의 실기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⑤모집일 현재 다른 유소년축구단이나 클럽 등에 가입된 선수가 추천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속팀의 승인서 또는 이적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선수의 탈퇴) ①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수를 퇴교조치 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무단으로 소집에 불응한 경우
2. 감독·코치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규율위반, 비행탈선 등으로 팀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탈퇴한 선수는 추후 재 입단 할 수 없다.

제8조(선수훈련 등) ① 선수훈련은 매주 3회(수,토,일요일)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감독은 선수들의 기술연마와 축구팀간의 교류를 위하여 유소년축구대회에 참가하거나, 전지훈련(캠프)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감독은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계획을 행사 15일전까지 단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①축구단의 감독·코치 및 선수는 매년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훈련이나 대회출전,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는 보험사의 약관에 의하며, 구청에 일체의 치료비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축구단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 제3항에 의한 감독 및 코치 수당
2. 제8조 제1항에 의한 상해보험료
3. 운동용품 구입비(선수 1인당 축구공 1개, 유니폼 2벌, 츠리닝 1벌)
4.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5.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학부모회) ①축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②학부모회는 축구단에 대하여 지원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고, 자율적인 운영주체로 한다.

③학부모회는 축구단 운영 및 선수기용, 선수영입 등 훈련사항 등 축구단 운영에 대한 일체의 간섭이나 참여를 할 수 없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남동구청 유소년축구단은 이 지침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감독 코치 추천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자는 유소년들을 지도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소년 축구단 감독(코치)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축구연합회장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선 수 추 천 서

○ 학 교 명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자는 _____선수로서 우수한 자질과 경기력을 보유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장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남동구청 유소년축구단 가입신청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성 별 : 남(), 여()
학교명 : 초등학교 학년 반 번호
신체사항 : 신장 cm, 체중 kg, 신체사이즈 :
전자우편(e-mail) :

(보호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동 번지 통 반
연락처 : 자택전화(), 휴대폰 ()
전자우편(e-mail) :

학생과의 관계 :

상기 학생의 동구청 어린이축구단에 가입을 희망하며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2005. . .

보호자 : (인)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

【별지4호서식】

훈 련 상 황 기 록 일 지

【훈련일자 : 200 . . ()요일】

시 간	: ~ :	장 소		결 재	코치	감독	문화홍보 실 장
총 원		참석인원					

(주요훈련내용)

※ 특이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628 호

(긴급)공사(소액수의)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논현동 66-5번지부근 (임시)공영주차장 설치공사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5번지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계약후 2일이내 착수]
- 공사개요 :
 - 포장공 : 아스팔트포장15.5a, 보조및혼합기층등 510m³, L형가로수채 98m, 보차도경계석및카스톱(경계석)248m
 - 배수공 : 흡관설치 17.5m, 관날개벽설치 2EA
 - 부대공 : 노체성토및다짐 400m³, 주차구획선도색72면, 지장물철거95m³, 성토운반297m³
- 공사금액 : 42,691,700원(추정가격 32,360,000원 부가세 3,236,000원 관급자재 7,095,700원)
 - ※ 기초금액 : 35,596,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5. 9. 15(목) 13:00 ~ 2005. 9. 21(수) 14:00
- 입찰진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5.9.21(수) 15:00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기간 : 2005. 9. 14(수) ~ 2005. 9. 21(수) [남동구청 교통과 ☎453-2854]
-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방법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 적격심사대상 제외공사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약관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가귀속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기초금액(35,596,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천토록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동일가격 건적자가 있을 경우 추천으로 결정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www.g2b.go.kr)의 G2B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인 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교통과)에서 제시한 계약특수조건, 설계서(시방서), 과업지시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 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체재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교통과(계약담당 한경희 ☎453-2732, 공사담당 윤득상 ☎453-2854)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9월 14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특별회계 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629 호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공유재산(舊만수3동 청사) 매각

나. 입찰내용

재산명칭	위 치	토지현황		건물면적 (㎡)	예정가격 (원)
		지목	면적(㎡)		
舊만수3동 청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850-2	대지	387.40	613.91 (지하1층/지상3층)	866,507,750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2005. 09. 20(화) 10:00 ~ 2005. 09. 29(목) 15:00까지 온비드에 제출

4. 낙찰자 선정(개찰) 일시 및 장소

2005. 09. 30(금) 15:0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 자격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 방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후 온비드의 입찰장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7. 입찰서의 제출

-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라.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외환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

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외환 위탁”입니다.

9. 입찰보증금 등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급번호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국고귀속)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유효한 입찰로서 최저입찰가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합니다.

나.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자동선택기능)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본 입찰은 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관련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일 입출금이 가능한 수표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보며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합니다.

다.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매각대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6항 규정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됨

15. 입찰유의사항

가.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 및 경비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나.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반사항 및 매각토지상의 건물 등 지장물로 인한 토지활용 제약 등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니 관계법규 및 현장물건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의 현장설명 없음)

다. 매각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위 제반 사항을 열람,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

- 계약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경영재정과(☎032-453-2237~9)
- 전자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02-3420-5015)

2005년 9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634 호

입 법 예 고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제정사유

- 노인복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유희인력의 증가로 노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어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임.

3. 주요내용

-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사업내용 및 기능은 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공동작업장확대, 지역특화사업개발, 수요처 조사 및 참여대상자 실태조사, 노인 재취업교육 등이다.(안제3조)
-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필요시 법인이나 단체로 위탁할 수 있다.(안제4조1항)
- 법인이나 단체로 위탁시 위탁선정위원회는 남동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안제5조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10.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참조:사회복지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88 (만수동1008번지)

(☎ 453-2383, FAX : 453-2359, 이메일 : eun9kim@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유희인력의 증가로 노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어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임

☐ 주요내용

-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사업내용 및 기능은 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공동작업장 확대, 지역특화사업개발, 수요처 조사 및 참여대상자 실태조사, 노인 재취업교육 등이다.(안제3조)
-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필요시 법인이나 단체로 위탁할 수 있다.(안제4조1항)
- 법인이나 단체로 위탁시 위탁선정위원회는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안제5조2항)

☐ 본 문 : "별첨"

☐ 참고사항 : 노인복지법 제23조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종 개발 및 보급과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노인인력관리센터(이하 “노인인력관리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라 함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 및 기능)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2.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3. 공동작업장 확대를 통한 일거리 확보
4.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개발
5. 노인일자리 수요처 조사 및 참여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6. 노인의 재취업교육 및 소양교육 실시
7. 기타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①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노인인력관리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인력관리센터 위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구청장이 지정한다.

제5조(위탁선정위원회) ①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 규정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수탁자 자산을 시설관리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의사가 없을 때에는 사업개시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5.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등) ①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모든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노인인력관리센터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당해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인인력관리센터는 매 회계 연도의 수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①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 등은 신청에 의해 노인인력관리센터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1.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1조(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참여자에게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알게 된 공무상 비밀 또는 일자리사업 수요자의 생활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12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관계공무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노인인력관리센터 종사자 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